

1.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동 조례는 지역 경제력의 증대와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산업단지의 계약체결은 매도자인 시장과 매수자인 기업인간의 동등한 지위에서의 계약행위이나 분양조건 위반시 매도자인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 편주의주의의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산업단지의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안 제19조제1항)
- 계약해지시 납입한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기타 납입금에 대하여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한 규정을 삭제
(안 제19조제2항)
- 계약해지시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할 것이 곤란한 경우와 분양받을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금을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 하거나,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삭제
(안 제19조 제3항)

□ 검토의견

- 동 조례에 의한 시장과 분양자간 분양계약은 동등한 지위에서의 쌍방계약사항이므로 매도자인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반환치 않고 기타 납입액에 대해서만 법정이자를 포함 반환토록한 조항은 규제정비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